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03시 47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보고	3

보고

2014.04.17 조회수 59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24
담당부서	회계과
상위법령	지방재정법 제10조
조례	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6조
유형	3호 - 보고의무
등록사유	지방재정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목적	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
규제내용	제6조(보고) 채권자는 채무액·이자·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[별지 제5호 서식]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23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27

Yeosu Web Contents

